

## 경찰공권력에 대한 시민의 인식이 범죄안전감에 미치는 영향 \*

A Study on the Influence of Citizens' Perception of Police Powers on Crime Safety Feeling

김 정 규\*\*

### 차 례

- |                   |            |
|-------------------|------------|
| I. 서 론            | IV. 분석결과   |
| II. 연구를 위한 일반적 논의 | V. 요약 및 결론 |
| III. 연구설계 및 방법    |            |

### 국 문 요 약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직무권한은 엄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경찰공권력은 치안질서를 유지하는 근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경찰권이 집행되는 여건과 수준은 회의적이지 않을 수 없다. 경찰관들은 법규 또는 질서위반자들로부터 심각한 수준의 항거와 무분별하고 부당한 불응으로 인하여 적법한 직무집행에 심각한 방해 받고 있다. 정당한 공권력에 대해 저항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경찰공권력의 권위를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야기하게 된다. 저하된 경찰공권력은 시민

들에게 불안감을 가중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경찰공권력에 대한 인식이 시민들의 범죄안전감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려는 목적에서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들이 인식하는 기초질서 준수와 공권력 존중은 평균보다 낮았다. 경찰공권력 침해자에 대한 법적처벌의 적정성도 평균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다.

둘째, 경찰공권력에 대한 인식에서 세대 간 차이가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층에서 경

\* 이 논문은 2016년도 호남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본 연구는 군산대학교에서 개최한 한국콘텐츠학회 춘계종합학술대회(2016. 5. 20)에서 발제한 “경찰공권력에 대한 인식수준이 범죄 안전감에 미치는 영향”을 수정·보완한 것임.

\*\* 호남대학교 경찰학과 조교수

찰공권력 경시풍조에 대한 인식이 높았고 경찰의 범죄대응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경찰공권력 인식의 차이는 없었다. 셋째, 범죄안전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경찰

의 범죄대응에 대한 만족도( $p < .001$ ), 국민의 기초질서 준수에 대한 인식( $p < .001$ ), 경찰공권력의 침해의 심각성인식( $p < .05$ ) 순서로 나타났다.

◆ 주제어 : 경찰공권력, 범죄안전감, 경찰활동인식, 공공안전, 기초질서

## I. 서론

경찰은 공권력을 근간으로 부여된 목적을 수행한다. 공권력 집행은 경찰이 존재하는 의의를 분명히 하는 요소이다. 그런데 치안일선에서 범법 행위자들이 정당한 경찰의 공권력 집행에 불응하고 항거하는 사태가 빈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심화되자 경찰공권력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공권력의 침해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이고 나아가 경찰력의 행정적·물질적·육체적·정신적 손실을 초래하여 국가 치안역량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결국 경찰 공권력에 대한 저항은 치안에 대하여 불안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시민은 순찰경찰을 식별하는 것만으로도 안전감을 인식<sup>1)</sup>하지만 반대로 경찰공권력 집행을 방해받는 현장을 목격하는 경우 안전감이 저하될 여지는 충분하다. 특히나 범죄로부터의 안전감은 삶의 질과 직결되는 요소이므로 경찰공권력에 대한 개인적 평가는 일상의 중요문제가 된다. 경찰공권력 침해에 대한 시민들의 목격은 경찰의 범죄대응 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특히 경찰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지역사회 경찰활동

1) Charles D. Hale. Police Patrol Operations and Management(NJ: Upper Saddle River, Pearson Prentice Hall., 2004), p. 235.

에서 경찰과 시민의 신뢰증진<sup>2)</sup>은 중요한 영역을 차지한다.

경찰공권력 침해에 관한 문제제기와 법규적 대응 또는 사법적 개선사항을 검토하는 연구들은 비교적 활발하게 수행되어 왔다. 반면 범죄의 안전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경찰의 공권력과 그 집행에 대한 시민의 인식이 범죄안전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에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 장은 경찰공권력이 침해되는 사회환경과 관련하여 공무집행 현황을 검토하고 기초질서위반의 문제점을 제시하였으며 범죄안전감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범죄의 두려움에 대해 이론적으로 검토했다. 3장에서는 실증연구의 개요와 방법을 제시했고 4장에서 경찰의 공권력에 대한 인식에 관한 조사 문항들에 대하여 기술통계분석과 연령별 인식의 차이에 대해 아노바(ANOVA) 검증을 실시했으며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범죄안전감에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력을 조사하였다. 5장에서는 연구를 요약하고 결론을 맺었다.

## Ⅱ. 연구를 위한 일반적 논의

### 1. 경찰공권력 집행과 침해

공권력은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이 행사하는 고권적 작용을 의미”<sup>3)</sup>한

2) Mike Brogden, Preeti Nijhar, Community Policing(Oregon:Willan publishing, 2013), p. 18.

3) 이노홍, “헌법소원의 대상으로서 공권력의 행사와 행정청의 지위”, 세계헌법연구 제17권 제2호,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11, 511쪽.

다. 따라서 경찰공권력이란 “국가기관인 경찰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권력적 작용으로 명령·강제를 행사하는 것”<sup>4)</sup>으로 정의할 수 있고 ‘경찰권’과 통용되기도 한다. 경찰공권력은 일반통치권에 기초를 둔 작용인만큼 적법한 작용인 경우라면 “자연인·법인·내국인·외국인을 막론하고 경찰권에 복종”<sup>5)</sup>해야 한다. 경찰은 민주주의 사회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sup>6)</sup>이므로 합법적 수단과 방법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그런데 경찰공권력 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우려 못지않게 경찰이 공권력을 집행하는 사회적 환경의 혼란성이 가중되고 있다.

주취자 행패, 경찰관폭행, 경찰기물파손 등 경찰의 공권력에 대한 항거 행위들은 공무집행방해죄를 성립한다.

〈표 1〉 공무집행방해 사범검거현황

구분	계	공무집행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구속	불구속	구속	불구속	구속	불구속
2011	13,052	674	10,310	28	1,454	61	333
2012	14,389	539	11,760	49	1,357	80	332
2013	13,407	433	11,536	25	874	51	260
2014	15,142	1,370	12,041	54	940	118	422
2015	14,556	1,131	11,368	40	1,091	164	499
2016	15,313	1,229	11,536	51	1,571	162	507

자료: 경찰통계연보(2017)

<표 1>과 같이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2011년 13,052명에서 2016년

4) 이평오, “경찰 공권력 수구성 확보 방안에 관한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2권 제4호, 한국민간경비학회, 2013, 196쪽.

5) 김남진, 경찰행정법, 경세원, 2007, 19쪽.

6) Mike Brogden·Preeti Nijhar, 앞의 책, p. 16.

15,313명으로 증가하였다. 범죄의 공식통계 분류상 공무집행 방해는 전체 공무원이 대상이다. 선진국에서는 경찰공무원 대상 공무집행방해 발생을 별도로 통계처리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예컨대 일본은 공식통계에 경찰관의 공무집행방해 건수를 제시하고 있으며, 독일에서는 공무집행방해의 절대 다수가 경찰관을 상대로 이루어지고 있어 2010년부터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발생건수 및 피해 경찰관수를 별도로 집계하고 있다.<sup>7)</sup>

대체로 한국의 공무집행방해 범죄의 객체로서 경찰공무원의 비중이 높을 것이라는 유추는 어렵지 않다.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주된 항거자는 주취자인데 2016년 공무집행방해사범 15,313명 중 10,934명(71.4%)이 주취상태<sup>8)</sup>였다. 2015년 경찰공무원의 공무 중 부상피해의 78.9%(317건)가 주취자에 의해서 발생했다.

경찰공무원의 공상이 증가하는 추세는 경찰공권력 침해의 심각화를 나타내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임무수행 중 경찰이 범인에게 피습당하거나 교통사고 등으로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1만345건이 발생했고 순직은 81건이었다. 부상 원인으로는 안전사고(4,660건·45%), 범인피습(2,875건·28%), 교통사고(2,546건·25%)순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습격으로 인한 경찰관의 공상은 경찰권집행에 대한 가장 심각한 형태의 항거라 할 수 있다. 이 비율은 2012년 전체 2,093건 중 602건으로 약 29%를 차지했고, 2013년에는 26%(2,055건 중 504건), 2014년 26%(1,983건 중 526건), 2015년 28%(1,808건 중 519건), 2016년 29%(1,797건 중 523건)로 나타났다.<sup>9)</sup> 경찰의 공권력에 대한 불복종과 공

7) 윤해성·한민경,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쟁점과 과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슈페이퍼 제44호, 2017, 5쪽.

8) 경찰청, 경찰청브리핑, 2017. 11. 13.

9) 박준호, “공무수행부상 경찰 매년 2,000명”, 뉴시스, 2017. 10. 10.

격행위들은 국민들의 범죄두려움 또는 안전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할 수 있다.

## 2. 기초질서 위반에 대한 경찰단속

기초질서는 시민이 공동체 생활 속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최소한의 행동규범을 의미한다. 질서규범은 근린생활 공동체를 주된 범주로 하며 그 규제대상은 생활관련 행동이라는 점에서 형사법이 규제대상으로 하는 범죄행위와 달리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을 규제대상으로 한다.<sup>10)</sup>

법률적 측면에서 기초질서는 네 가지 특성이 있다. 첫째, 경미한 의무위반 행위로 일상생활과 관련되어 많은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행위이다. 둘째, 그 제재수단이 형벌이 아닌 과태료이다. 셋째, 주로 경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에 속하는 행위들이다. 넷째, 동일한 사유에 의해 동일한 사람에게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이 병과 되지 않는 처벌이다.<sup>11)</sup>

기초질서 위반원인은 행위자를 중심으로 개인의 양심과 같은 내부문제와 외부적 환경요인으로 구별해 볼 수 있다. 내부문제는 공공에 관한 사회적 약속을 지키는 것에 대한 피해의식과 그와 연관된 이기심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반면 외부문제는 단속행태, 타인의 행동, 처벌의 적절성 등의 조건들이 해당한다. 경찰의 단속에 관한 대표이론으로는 ‘깨진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이 있다. 기초질서 위반이 중대범죄로 발전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나아가 무관용 경찰활동을 정당화했다는 점에서도 가치가 있다. 무관용 경찰활동의 핵심은 경찰의 엄격한 단속활동이

10) 이상안, 사회질서론, 대명출판사, 2002, 544쪽.

11) 이상안, 앞의 책, 546쪽.

질서유지에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경찰의 기초질서에 대한 엄정한 단속효과를 위반자 개인은 물론이고 타인에게도 파급될 수 있다. 이는 스몰빅(Small Big)이론들을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키스 카이저(kess keizer) 등은 사소한 기초질서 위반이 타인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증거를 제시했다.<sup>12)</sup> 기초질서와 관련된 보다 효과적인 스몰빅의 적용은 이미 정돈된 환경에 사람들을 몸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가 복구되는 과정을 목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에 있다.<sup>13)</sup>

스몰빅의 관점에서 기초질서위반에 대한 경찰의 엄정한 단속활동은 단속하는 광경을 목격한 시민들에게 억제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반대로 경찰의 단속이 부적절하거나 오히려 공권력이 침해당하는 상황이 노출된다면 부정적 인식이 나타날 수도 있다.

12) 쇼핑몰에 자전거를 타고 온 방문객들이 쇼핑을 하는 동안 이들 자전거 핸들에 광고전단지를 부착했다. 근처에 쓰레기통은 없었기 때문에 방문객들은 양자택일만 가능했다. 자전거 손잡이에 붙어 있는 전단지를 떼어내 집으로 가져가거나 투기하는 것이다. 실험결과 골목길에 낙서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자전거 주인들 중 33퍼센트가 전단을 바닥에 버렸고 낙서가 되어 있는 경우 69퍼센트가 전단을 투기했다. 깨진창 이론을 지지하는 실험결과이며 동시에 기초질서 위반이 확산되는 영향을 증명하고 있다; Steve J. Martin, Noah J. Goldstein, Robert B. Cialdini. / 김은령·김호역, 설득의 심리학, 21세기북스. 2015, 34쪽.

13) 예컨대 직장 환경을 개선하려할 때 최선의 스몰빅은 주방과 직원 탈의실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직원들이 퇴근한 후에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주위 환경이 깨끗하게 변화되는 과정을 볼 수 있도록 청소시간을 퇴근 시간과 겹치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레이몬드 레노(Raymond Reno) 등의 실험에서는 누군가 버려진 전단을 줍는 모습을 본 행인들은 단 4퍼센트만 전단을 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teve J. Martin, Noah J. Goldstein, Robert B. Cialdini. / 김은령·김호역, 앞의 책, 35쪽.

〈표 2〉 최근 기초질서단속 현황

연도	합계	주요 단속 대상					
		오물 투기	음주 소란	인근 소란	업무방해	노상 방뇨	무임 승차
'10	86,592	15,039	20268	25267		4772	
'11	81,529	17,410	15575	18648		5173	
'12	27,260	4,311	8879	5593		2663	
'13	55,455	18,298	10163	6194	335	3433	6,446
'14	131,961	67,604	18870	14378	618	6635	
'15	138,832	62,097	20858	14735	905	8699	14,746
16	108,749	30,387	21,923	12,000	1,033	8,067	15,462

자료: 경찰통계연보(2017)

<표 2>와 같이 기초질서위반 단속건수는 2010년 86,592건에서 2015년 138,832건으로 증가하였다. 2012년의 경우 감소하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성은 분명하다.

또한 경찰의 기초교통질서 단속현황도 증가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경찰이 부과한 교통과태료는 3조원이 초과되었고 건수는 5,605만건에 이르고 있다. 적발건수도 해마다 증가해왔다. 2011년 935만건(4,818억원), 2012년 967만건(4,904억원), 2013년 965만건(4,892억원), 2014년 1,067만건(5,464억원), 2015년 1,112만건(5,670억원)으로 집계되었다.<sup>14)</sup> 국민 1인당 1.09건이 단속되었다.

### 3. 범주의 두려움 또는 안전감

범죄학의 연구관심은 범죄자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그 주변과 대상으로 확대되어 왔다. 현재는 학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범죄의 두려움’은 범죄

14) 박홍두, “5년간 경찰이 매긴 교통과태료만 2조 8000억”, 경향신문, 2016. 9. 2.

자 또는 범죄행위 못지 않은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란 “범죄나 이와 연관된 상징에 대해 행위자가 결부 짓는 무서움 혹은 불안감의 정서적 반응”<sup>15)</sup>을 의미한다. 미국범죄피해자조사(NCVS: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에서 범죄 두려움은 “야간에 혼자 있을 때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거나 느끼실 것 같습니까?”라는 문항으로 측정한다. 범죄두려움과 안전감은 유사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국제범죄피해자조사에서 사용하는 설문도 “당신은 저녁에 집 주변을 걸을 때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나요? 그 안전함의 정도가 어느 정도 인가요?”라는 ‘안전’을 문항으로 측정한다<sup>16)</sup>. 콘클린(Conklin, 1975)은 범죄의 지각을 안전감으로 평가하였다.<sup>17)</sup>

시민들의 범죄두려움 수준을 약화시키는 노력은 경찰의 주요업무로서 안전감을 증진하는 효과를 갖는다.<sup>18)</sup>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과거의 직접 경험, 주변인들의 간접경험, 지역사회 상호작용과정 그리고 무질서로 인하여 발생<sup>19)</sup>된다.

범죄 두려움은 원인에 따라 개별화된 모델들로 설명된다. 우선 무질서 모델은 개인이 인식하는 물리적 무질서와 기초질서 위반과 같은 사회적 무질서가 범죄의 두려움을 증가시킨다는 이론들에 근거한다. 직접 목격하

15) Steven P. Lab. / 이순래·박철현·김상원 역, 범죄예방론, 그린출판사, 2011, 25쪽.

16) Timothy D. Crowe, Lawrence J. Fennelly. / 한국셉테드학회 편찬위원회역, 셉테드: 범죄예방설계, 기문당, 2013, 305쪽.

17) 조상현, “범죄두려움 설명모델의 영향력 비교”, 제1회 범죄 및 경찰학술대회 자료집, 2017, 201-217쪽.

18) Cossman & Rader, Cossman, J. S., & Rader, N. E. “Fear of crime and personal vulnerability: Examining self-reported health”. Sociological Spectrum, Vol. 31, No. 2, 2011, p. 150.

19) Victor E. Kappeler and Larry K. Gaines. Community Policing: A Contemporary Perspective, NY: Matthew Bender & Company, 2009, p. 184.

무질서는 범죄피해에 대한 주관적 가능성을 상승<sup>20)</sup>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수 있다.

도시계획 측면에서도 범죄 두려움의 요인으로 낙서, 경범죄, 무례한 행동들이 논의된다. 무질서와 범죄 두려움 간의 인과성에 대해 선행연구들의 견해가 일치되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연관성은 부정하기 어렵다. 예컨대 무질서는 범죄를 야기하고 발생한 범죄는 직간접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게 되며 그에 따른 범죄피해 뉴스는 사건·사고의 정보로서 범죄두려움이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무질서가 범죄를 야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절도실험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sup>21)</sup> 또한 쓰레기가 많고 지저분한 아울렛 매장 일수록 도난 사건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22)</sup> 무질서한 환경의 범죄유발성을 방증하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

20) Brunton-Smith, I., & Jackson, J., Urban fear and its roots in place. In V. Ceccato (Ed.), Urban fabric of crime and fear, 2012, Springer. Electronic copy available at: <http://ssrn.com/abstract=1670657>; Sergi Valera, Joan Guàrdia, Perceived insecurity and fear of crime in a city with low-crime rates, 2014, p. 195.

21) 실험자는 돈을 담은 우편 봉투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우체통에 걸쳐놓았다. 실험에서의 통제는 우체통 주변을 청결하게 한 것과 지저분하게 한 것이었다. 주변이 깨끗한 경우에는 행인 중 13퍼센트만 우편 봉투를 가져갔지만 주변이 낙서 등으로 지저분한 경우에는 27%의 행인이 봉투를 가져갔다; Timothy D. Crowe, Lawrence J. Fennelly. / 한국셉테드학회 편찬위원회 역, 앞의 책, 307쪽.

22) Steve J. Martin, Noah J. Goldstein, Robert B. Cialdini. / 김은령·김호 역, 앞의 책, 34쪽.

### Ⅲ. 연구설계 및 방법

#### 1. 연구대상 및 분석방법

이 연구는 2014년 11월 3일부터 25일까지 국내 주요 5대 도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일반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층화표출하여 전문조사원에 의한 전화조사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조사 분석은 윈도우용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표준오차는 95% 신뢰수준의  $\pm 3.10\%$ 였다.

연구모형에서 종속변수는 시민의 범죄에 대한 불안감으로 선정하였는데 문항은 미국범죄피해자조사의 설문을 참조하여 “귀하의 범죄로부터의 안전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로 조사했다.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를 범죄안전감으로 조작하였다.

독립변수는 국민들의 기초 법질서이행 수준에 대한 인식, 경찰공권력에 대한 경시풍조 인식, 경찰에 공권력 침해의 심각성 인식, 공권력 침해행위에 대한 경찰 대응수위의 적절성 인식, 공권력 침해행위에 대한 경찰대응의 적절성 인식, 경찰의 범죄대응의 만족도로 측정했다. 모든 변수는 리커트 5점 척도를 이용하였다.

전화설문조사의 특성상 설문문항의 길이는 가능한 간략하게 구성하였다.

#### 2. 가설의 설정

가설1 :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경찰공권력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2 : 경찰 공권력에 대한 인식은 범죄안전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1 : 국민의 기초 법질서 준수에 대한 인식은 범죄안전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2 : 경찰공권력 침해 수준에 대한 심각성 인식은 범죄안전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4 : 경찰공권력 경시풍조에 대한 인식은 범죄안전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5 : 경찰공권력 침해에 대한 대응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은 범죄안전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6 : 경찰공권력 침해자처벌의 법적수위에 대한 인식은 범죄안전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표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비율(%)	직업	비율(%)	거주	비율(%)
연령	20대	31.2	전문·자유직	18.9	서울	20
	30대	21.0				
	40대	24.0	사무·기술직	17.1	대전	20
	50대이상	23.8				
성별	남자	47.1	경영관리직	3.2	대구	20
	여자	52.9	판매·서비스	19.3		
학력	중졸이하	3.0	일반직업·일용근로	1	부산	20
	고졸	36.7				
	대학교졸업	56	생산운수	0.6	광주	20
	대학원이상	4.3	전업주부	7.2		
			대학생	14.5		

조사대상은 남성이47.1%(n=471), 여성이52.9%(n=529)였고 연령은20대 31.2%, ,40대 24%, 50대 이상 23.8%, 30대 21% 순이었다. 직업별로 판매·서비스직 19.3%, 전문직·자유직 18.9%, 사무직·기술직 17.1%, 대학

생 14.5%, 전업주부 7.2%, 경영·관리직 3.2%, 일반작업·일용근로직 1.0%, 생산·운수직: 0.6%였다. 학력은 대졸학력이 56%, 고졸 36.7%, 대학원졸 이상 4.3%, 중졸 이하 3% 순이었다. 30대는 사무·기술직종사자가 높고, 40대는 전문·자유직, 50대 이상은 자영업비율이 높았다. 자연출현에 의한 조사방식임을 감안하여도 성별·연령별 고른 응답분포를 보였다.

## IV. 분석결과

### 1. 기술통계분석

#### 1) 국민 기초질서준수에 대한 인식

“국민의 기초질서 준수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라는 항목의 응답결과 36.4%가 부정적(약간 낮다·매우낮다)이라고 응답했다. 긍정적(약간 높다·매우높다)인 응답은 불과 8.3%에 불과했고 55.3%는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평균은 2.61점이었다.

〈표 4〉 국민의 기초질서 준수인식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평균 (표준편차)
매우 낮다	127	12.7	12.7	12.7	2.61 (.846)
약간 낮다	237	23.7	23.7	36.4	
보통이다	553	55.3	55.3	91.7	
약간 높다	69	6.9	6.9	98.6	
매우 높다	14	1.4	1.4	100.0	
합계	1000	100.0	100.0		

## 2) 경찰공권력에 대한 인식

〈표 5〉 경찰 공권력의 경시풍조 존재여부에 대한 인식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30	3.0	3.0	3.0	3.23 (.863)
약간 그렇지 않다	120	12.0	12.0	15.0	
보통이다	512	51.2	51.2	66.2	
약간 그렇다	265	26.5	26.5	92.7	
매우 그렇다	73	7.3	7.3	100.0	
합계	1000	100.0	100.0		

한국사회에 경찰 공권력에 대한 경시풍조가 존재하지의 여부에 대한 설문에서 경시풍조가 없다는 응답(전혀 그렇지 않다·약간 그렇지 않다)는 15퍼센트였고 반대로 경시풍조가 있음(매우 그렇다·약간 그렇다)을 인정하는 비율은 33.8퍼센트로 나타났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51.2퍼센트였다. 평균은 3.23으로 국민들은 공권력경시풍조가 평균 이상으로 존재한다고 인식하였다.

〈표 6〉 공권력 경시풍조의 원인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국민의 왜곡된 권리의식	38	11.2	11.2	11.2
사회에 대한 불신·불만	116	34.3	34.3	45.6
공권력 침해자에 대한 낮은 처벌	101	29.9	29.9	75.4
경찰의 공권력 남용	81	24	24.0	99.4
기타	2	0.6	.6	100.0
	338	100	100.0	

경찰의 공권력 경시풍조의 원인에 대한 문항은 338명이 응답했다. 비율 순서대로 제시하면 사회에 대한 불신불만(n=116, 34.3%), 공권력 침해자

에 대한 낮은 처벌(n=101, 29.9%), 경찰의 공권력 남용(n=81, 24%), 국민들의 왜곡된 권리의식(n=38, 11.2%) 순으로 나타났다.

### 3) 경찰공권력 침해의 심각성 정도

〈표 7〉 경찰공권력 침해의 심각성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평균 (표준편차)
매우 양호하다	13	1.3	1.3	1.3	3.63 (.887)
약간 양호하다	57	5.7	5.7	7.0	
보통이다	399	39.9	39.9	46.9	
약간 심각하다	351	35.1	35.1	82.0	
매우 심각하다	180	18.0	18.0	100.0	
합계	1000	100.0	100.0		

현재 경찰에 대한 욕설·비하, 공무집행방해, 지구대 및 파출소 내 소란·난동행위 등 경찰공권력 침해행위의 심각성 정도를 설문하였다. 분석결과 현재 경찰공권력의 침해수준이 심각하다(약간 심각하다-매우 심각하다)는 것에 53.1%가 긍정하였다. 양호하다는 응답은 불과 8.3%에 그쳤으며 보통이라는 응답은 39.9퍼센트였다.

### 4) 경찰 공권력 침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수위의 적정성

〈표 8〉 경찰 공권력 침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수위의 적정성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평균 (표준편차)
매우 약하다	203	20.3	20.3	20.3	2.36 (.891)
약하다	309	30.9	30.9	51.2	
보통이다	421	42.1	42.1	93.3	
강하다	61	6.1	6.1	99.4	
매우 강하다	6	.6	.6	100.0	
합계	1000	100.0	100.0		

경찰공권력 침해자에 대한 법률적 처벌수위가 적당한가에 대한 항목에 대하여 응답자의 71.5퍼센트가 약하다(매우 약하다·약하다)고 응답한 것과 비교하여 불과 6.6퍼센트만이 수위가 강하다(강하다·매우 강하다)고 응답하였다.

5) 경찰공무원의 공권력 침해에 대한 대응수위<표 9> 경찰공무원의 공권력 침해에 대한 대응수위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평균 (표준편차)
매우 낮다	156	15.6	15.6	15.6	2.58 (1.035)
낮다	324	32.4	32.4	48.0	
보통이다	341	34.1	34.1	82.1	
높다	140	14.0	14.0	96.1	
매우 높다	39	3.9	3.9	100.0	
합계	1000	100.0	100.0		

경찰에 대한 욕설 및 비하, 공무집행방해, 소란·난동행위 등 공권력 침해행위에 대한 경찰의 대응 수위에 대하여 설문하였다. 응답결과는 낮다(매우 낮다·낮다)는 응답은 63.6퍼센트였고 높다는 응답은 21.9퍼센트였다. 보통은 34.1퍼센트로 나타났다. 평균은 2.58이다.

6) 경찰공무원의 범죄대응력에 대한 만족도

<표 10> 경찰의 범죄대응력 만족도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평균 (표준편차)
매우 불만족	92	9.2	9.2	9.2	2.64 (.789)
불만족	269	26.9	26.9	36.1	
보통	553	55.3	55.3	91.4	
만족	77	7.7	7.7	99.1	
매우 만족	9	.9	.9	100.0	
합계	1000	100.0	100.0		

현재 경찰이 범죄에 대한 대응력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문항에 불만족하다는 응답이 36.1퍼센트로 나타났다. 만족한다는 응답은 8.6퍼센트였고 보통은 55.3퍼센트였다. 평균은 2.64였다.

## 2. 경찰공권력에 대한 대상별 평균의 차이

### 1) 연령층에 따른 경찰공권력에 대한 인식의 차이

〈표 11〉 연령층에 따른 경찰공권력에 대한 인식의 차이

구 분	연 령	평균	표준편차	F 값	유의확률
국민 기초질서 준수의식	20 대	2.48a	.841	5.898	.001**
	30 대	2.55a	.783		
	40 대	2.76b	.863		
	50 대	2.67b	.863		
경찰 공권력 경시 수준	20 대	3.26b	.777	3.465	.016*
	30 대	3.33b	.734		
	40 대	3.25b	.926		
	50 대	3.08a	.986		
경찰공권력 침해의 심각성	20 대	3.65	.840	.924	.428
	30 대	3.67	.849		
	40 대	3.55	.900		
	50 대	3.65	.964		
경찰의 공권력 침해 대응수위	20 대	2.57	.953	.625	.599
	30 대	2.67	1.041		
	40 대	2.57	1.000		
	50 대	2.54	1.160		
경찰공권력 침해자에 대한 법적처벌 수위	20 대	2.49b	.814	4.928	.002**
	30 대	2.27a	.823		
	40 대	2.39b	.948		
	50 대	2.23a	.963		
경찰의 범죄대응 만족도	20 대	2.58a	.818	3.113	.026*
	30 대	2.56a	.731		
	40 대	2.70b	.692		
	50 대	2.74b	.876		

\*p<.05, \*\*p<.01, \*\*\*p<.001

Duncan: a < b

경찰공권력에 대한 인식에 있어 연령층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국민 기초질서 준수인식, 경찰공권력 경시풍조의 존재여부, 경찰공권력 침해자에 대한 법적처벌 수위, 경찰의 범죄대응만족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식의 차이가 나타났다. 국민의 기초질서준수인식에 대해서는 40대와 50대가 20·30대에 비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고 경찰공권력 경시풍조에 대해 50대가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공권력 침해자에 대한 법적처벌 수위에 있어서는 20·40대가 30대·50대 이상에 비하여 강하다고 인식하였다. 경찰의 범죄대응 만족도는 40·50대 이상에 비하여 20·30대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별에 따른 경찰공권력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위해 t-검정을 실시한 결과 모든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 3. 다중회귀분석

경찰공권력에 대한 인식이 범죄안전감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자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종속변수의 자기상관은 Durbin-Watson 지수를 검정한 결과, 1.858로 나타나 자기상관이 없었다. 독립변수간 다중공선성은 VIF 지수를 살펴본 결과 1.022~1.084로 모두 10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추정된 회귀모형의 적합도에 대한 F통계량은 20.057(유의확률 .000)으로 유의하고  $R^2$ 은 .108로 나타났다.

〈표 13〉 범죄안전감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B	$\beta$	$R^2$	F
Constant	1.932		.108	20.057***
경찰의 범죄대응에 대한 만족도	.290	.269***		
국민의 기초법질서 준수에 대한 인식	.112	.111***		
경찰공권력의 침해의 심각성(역코딩)	.060	.77**		
경찰공권력에 대한 경시풍조 인식(역코딩)	-.038	-.039		
경찰공권력 침해 시 경찰대응의 적절성 인식	-.012	-.014		
경찰공권력 침해자처벌 수위에 대한 인식	-0.17	-0.18		

\*\*\*  $p < .001$  \*\*  $p < .05$ 

범죄안전감에 영향요인으로 선정한 경찰의 범죄대응만족도, 국민의 기초법질서준수의식, 경찰공권력 침해수준(역코딩), 경찰공권력 경시풍조인식, 경찰공권력 침해에 대한 대응의 적절성, 경찰공권력 침해자처벌의 법적수위에 대한 인식을 독립변수로 고려하였다. 회귀계수들의 유의확률이 1% 또는 5%에서 유의한 것은 “경찰의 범죄대응의 만족도”, “국민의 기초법질서 준수에 대한 인식”, “경찰공권력의 침해의 심각성(역코딩)”이었다. 베타계수로 본 독립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경찰의 범죄대응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크고 다음이 “국민의 기초법질서 준수에 대한 인식”, “경찰공권력 침해의 심각성 인식(역코딩)”이다.

## V. 요약 및 결론

경찰공권력의 실추와 비하가 심각해지는 추세이다. 위법자들은 경찰공권력을 무시하고 경찰관은 권한을 소극적으로 발동하거나 회피하기도 한다. 경찰로부터 사회적 안전판의 역할을 기대하는 시민들은 경찰공권력의 약화현상을 범죄의 안전감 측면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치안정책의 보완에 있어 중요한 정책적 고려요인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질문에 기반하고 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기술통계분석결과 국민의 기초질서 준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보통보다 낮은 2.61로 나타났다. 전술하였듯이 기초질서의 위반은 중대범죄의 예비적 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의미를 내재하고 있다. 다음으로 경찰공권력의 경시풍조에 대해 평균보다 높은 3.23이 경찰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가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경찰공권력이 경시되는 분위기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응답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한 공권력 경시풍조의 원인에 대해서는 사회에 대한 불신불만(34.4%), 공권력 침해자에 대한 낮은 처벌(29.9%), 경찰의 공권력 남용(24%), 국민들의 왜곡된 권리의식(11.2%)순으로 나타났다. 경찰공권력 침해의 심각성에 대한 응답은 평균 3.63으로 들이 경찰공권력이 경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수준도 평균 이상으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경찰공권력 침해자에 대한 법적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평균 이하(2.36)로 인식하였다. 마찬가지로 경찰공무원의 공권력 침해에 대한 대응수위에 대해서도 평균 이하(2.58)로 응답하였다. 경찰의 범죄대응력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는 평균 이하(2.64)로 불만족을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층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항목은 국민기초질서 준수인식, 경찰 공권력의 경시수준, 경찰공권력 침해자에 대한 법적처벌 수위의 적절성, 경찰의 범죄대응 만족도였다. 2·30대가 4·50대 이상에 비하여 낮고 인식하였다. 경찰공권력에 대한 경시 수준은 저연령층이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경찰의 범죄대응 만족도에 대해서는 40·50대 이상이 20·30대에 비하여 높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간 차이를 종합하면 경찰활동에 대한 인식에 있어 세대간 차이가 발견되었다. 반면 성별에 따라서는 경찰공권력에 대한 인식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는 분석되지 않았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범죄의 안전감에 대한 영향요인으로서 “경찰의 범죄대응에 대한 만족도( $p < .001$ )”, “국민의 기초질서 준수에 대한 인식( $p < .001$ )”, “경찰공권력의 침해의 심각성인식( $p < .05$ )” 순서로 나타났다. 경찰공권력에 대한 경시풍조의 인식, 경찰공권력 침해에 대한 경찰대응의 적절성인식, 경찰공권력 침해자 처벌의 법적 수위에 대한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 한국사회에 경찰공권력의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경찰관 직무현장에서의 권한을 향상하기 위해 관련 법규의 개정이 추진되어야 하고 동시에 공권력 침해자에 대해 더욱 엄격한 처벌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민의 기초질서준수를 위한 경찰의 단속활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되는 것이 범죄안전감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이밖에도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방해의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여 경찰공무집행방해에 대한 보다 정밀한 분석을 시행하여 능동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논문접수 : 2018. 4. 8, 심사개시 : 2018. 4. 19, 게재확정 : 2018. 5. 16.〉

## 참 고 문 헌

### I. 국내문헌

#### 1. 단행본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2016.

김남진, 경찰행정법, 경세원, 2007.

이상안, 사회질서론, 대명출판사, 2002.

Steve J. Martin, Noah J. Goldstein, Robert B. Cialdini. 설득의 심리학, 김은령·김호 역. 서울: 21세기북스. The Small Big, 2015.

Steven P. Lab. 범죄예방론, 이순래·박철현·김상원 역, 서울: 그린; Crime Prevention Approach Practices and Evaluations, 2011.

Timothy D. Crowe, Lawrence J. Fennelly. 「셉테드: 범죄예방설계」, 한국셉테드학회 편찬위원회 역, 서울: 기문당, 2016.

#### 2. 논 문

이노홍, “헌법소원의 대상으로서 공권력의 행사와 행정청의 지위”, 세계헌법연구 제17권 제2호,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11.

윤해성·한민경,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쟁점과 과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슈페이퍼 제44호, 2017.

이평오, “경찰 공권력 수긍성 확보 방안에 관한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2권 제4호, 한국민간경비학회, 2013.

조상현, “범죄두려움 설명모델의 영향력 비교”, 제1회 범죄 및 경찰학술대회 자료집 201-217, 2017.

주희종, “범죄에 대한 공포 연구와 그 정책적 함의”, 형사정책 제8권, 한국형사정책학회, 2006.

## II. 외국 문헌

### 1. 논문

- Brunton-Smith, I., & Jackson, J. Urban fear and its roots in place. In V. Ceccato (Ed.), *Urban fabric of crime and fear*. Springer. 2012, Electronic copy available at: <http://ssrn.com/abstract/41670657>.
- Charles D. Hale, *Police Patrol Operations and Management*, NJ: Upper Saddle River, Pearson Prentice Hall, 2004.
- Conklin, J. E., *The impact of crime*, New York: Macmillan, 1975.
- Cossmann & Rader, Cossmann, J. S., & Rader, N. E., Fear of crime and personal vulnerability: Examining self-reported health. *Sociological Spectrum*, Vol. 31 No. 2, 2011.
- Mike Brogden, Preeti Nijhar, *Community Policing*, Oregon: Willan publishing, 2013.
- Sergi Valera, Joan Guàrdia, Perceived insecurity and fear of crime in a city with low-crime rates. 195-205, 2014.
- Victor E. Kappeler and Larry K. Gaines, *Community Policing: A Contemporary Perspective*, NY: Matthew Bender & Company, 2009.

## III. 기타 자료

- 박준호, “공무수행부상 경찰 매년 2000명”, 뉴시스, 2017. 10. 10.
- 박홍두, “5년간 경찰이 매긴 교통과태료만 2조 8000억”, 경향신문, 2016. 9. 2.

< ABSTRACT >

## A Study on the Influence of Citizens' Perception of Police Powers on Crime Safety Feeling

Kim, Jyung-Gyu

Police officers must perform their duties legally and strictly. Because police power is the basis for maintaining order. However, the situation of policing in Korea is different from the expecting role of modern nation police. Field police officers are suffering from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due to serious violence against the law or order violators. The neglect of police power can create various problem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perception of police power on the crime safety of citizen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public perception of compliance with basic order, perception of neglecting public power, and perceived appropriateness of punishment for violators of police authority were negative compared to the average. Second,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the generations in perception of police power. As age increased, the perception of neglected police power was low. Sex was not a factor in the perception of police power. Third, influencing factors of crime safety were: ① crime response satisfaction of police ( $p < .001$ ) ② compliance perception of basic public order ( $p < .001$ ), ③ perceived seriousness of weakening police authority ( $p < .05$ ).

◆ **Key Words** : Police Power, Safety Feeling of Crime, Perception of Policing, Public Safety, Elementary Social Order